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관련 벌칙 상향〉

■ 강승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91호)

2025.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관련 벌칙 상향(안 제71조 제1항 제13호의2 신설 등)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승규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4.

다. 회 부 일 : 2025. 7.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령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침해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고 후 신속한 대응도 이루어지지 않아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피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되는 현행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1조 등).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관련 벌칙 상향(안 제71조 제1항 제13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1조 제1항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 신설 등).
- 제4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48조의4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조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①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설>	<u>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u>
<신설>	<u>13의3.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 ----- ----- -----.
1. ~ 6의5. (생략)	1. ~ 6의5. (현행과 같음)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7. ~ 12. (생략)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48조의3 제1항)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1)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48조의4 제3항)2).

○ 그런데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민·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과거 동 사고와 관련된 서버의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음3).

- 침해사고를 신고하였다면 정부가 관련 조사를 통해 악성코드를 발견하여 조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법률상 의무 위반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 미신고 및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현행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벌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의무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잃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를 다른 위반행위의 경우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현행 정보통신망법이 침해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2)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T 침해사고 원인분석 결과 및 조치방안 발표', 2025.7.5.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4),
침해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와 침해사고의 신고 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같게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래와 같이 현행법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살펴볼 때, 개정안이 유사한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침해사고 미신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분실
· 도난 · 유출 시에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
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6).

-
- 4)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 5)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생략)
-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8. 제34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6)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시정명령 미이행)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8)에 대한 침해 사고 발생 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9).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5년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침해사고 미신고 및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를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7)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서생략)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해당 시설의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9) **제14조(복구조치)**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서생략)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과한 사례는 아직 없는 상황¹⁰⁾으로, 현행법상 과태료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실효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실태를 보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성도 있어 보임.

- 종합하면, 형벌 상향에 대해서는 침해사고 미신고 및 관련 조치 미이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정 및 타 유사 입법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벌칙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는 국가나 개인의 법익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동원되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¹¹⁾ 등 다른 법률상 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태료 부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행정 질서상 목적을 형사처벌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한 타 법률과의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침해사고 신고의무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7월 침해사고 미신고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진행 중임.

11)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침해사고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10937호,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30